

서울문화재단 정관 개정 추진

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거 재단 정관 개정 추진 건에 대하여 사전에 보고드리고자 함.

1. 추진 배경

- 「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(서울특별시조례 제6110호, 2016.1.7.개정)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화
- “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 개선계획”(공기업담당관-4799, 2016.4.29.) 및 “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”(공기업담당관-8578, 2016.7.27.)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 관련 외주에 대한 심의 강화

2. 주요 개정내용

- **조례 내용 반영 현행화**
 - 제4조(재단의 사업 범위) ‘지역문화의 육성·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’ 추가 (조례 개정내용 반영)
 - 제13조(임원의 직무) 이사장이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개정(조례와 상이한 정관 내용 현행화)
- **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제도 개선계획 반영**
 - 제9조(임원의 임면) 당연직 이사 직위 조정(서울시 기획조정실장 ⇒ 서울시 재정기획관)으로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 활성화
 - 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당연직이사에 대한 수당 지급 금지 내용 삭제
- **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안전분야 외주화 개선 종합계획 반영**
 - 제24조(의결사항) 이사회 의결사항에 안전 분야 사업 외주화에 대한 내용 추가

-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.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 4.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5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	<p>제4조(사업의 범위) 재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문화예술의 창작·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2.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3. 국내·외 문화예술 교류 4. 시민의 문화향수 및 창의력 증진 <u>5. 지역문화의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(신설)</u> 6.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<u>기획조정실장</u> 2. 서울특별시 <u>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</u> <p>④~⑤(생략)</p>	<p>제9조(임원의 임면) ①~② (생략)</p> <p>③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 <u>재정기획관</u> 2. 서울특별시 <u>문화본부장</u> <p>④~⑤(생략)</p>
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<u>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⑤~⑥ (생략)</p>	<p>제13조(임원의 직무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만약 대표이사까지 부재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제9조제3항의 당연직 이사 중 <u>문화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u></p> <p>⑤~⑥ (생략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 (생략)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18조(임·직원의 보수) ① (생략) ②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(삭제)</u></p>
<p>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7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	<p>제24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재단의 기본운영방침에 관한 사항 2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6. 중요한 규정의 제정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 7.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.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. 법령, 조례,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<u>10. 시민 또는 작업자의 안전·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(신설)</u> 11. 기타 이사장이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